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내



[제조업]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뀝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I.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사업주 등의 책임강화

법 적용 대상 확대

-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을 「(종전) 근로자 →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였고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업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 마련

대표이사 의무 ('21.1.1 시행)

-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하였으며,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함
- » **대상** 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②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 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 » **내용** ①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②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③ 안전·보건관리 체계·인원 및 역할 ④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

발주자 의무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 계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조치 의무**를 신설

- ① **계획단계**: 공사규모·예산·기간 등 사업 개요,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 설계조건 등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②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 ③ **시공단계**: 최초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결과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강화

안전인증

- 사업장에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수입·사용 등을 위해서는
- » 사전에 안전인증(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받거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하여야 함
 - » 개정법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이었던 기압조절실, 잠수기,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를 삭제한 반면,
 - »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포함하여 강화하였고 안전인증 대상에서 기계톱을 삭제함

안전검사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계·기구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개정법에서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화확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삭제**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 안전검사 대상

구분	대상	법조항
안전인증 (30품목)	기계기구 (9품목) 1. 프레스 2. 전단기 및 절곡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롤러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대 9. 곤돌라 10. 기계틀(삭제)	제84조
	방호장치 (9품목)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7.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8. 가설기재 9.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신설)	
	보호구 (12품목) 1.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11. 용접용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자율안전 확인신고 (20품목)	기계·기구 (10품목)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동공틀, 대패, 루타기, 락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10. 인쇄기 11. 기압조절설(삭제)	제89조
	방호장치 (7품목)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 가공용 동공틀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 가설기재(안전인증 대상 제외) 8.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삭제)	
	보호구 (3품목) 1. 안전모(안전인증대상 안전모 제외) 2. 보안경(안전인증대상 보안경 제외) 3. 보안면(안전인증대상 보안면 제외) 4. 잠수기(삭제)	
안전검사 (13품목)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은 제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9. 화확설비 및 그 부속설비(삭제)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삭제) 11.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 13. 고소작업대(자동차 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 작업대로 한정) 14. 컨베이어 15. 산업용 로봇	제93조

**지게차
안전강화**

사업장에서 중량물 운반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 설치와 운전자 교육이수** 신설

- * **[안전장치]** 후진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등 후방 확인 조치
- ** **[교육이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중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 받지 않는 3톤 미만 전동식 지게차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이 있거나 지게차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고소작업대
안전강화**

지게차, 리프트 등 **24종류의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자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품목에 **고소작업대**가 추가 됨

- * **24종류** :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셀 12. 버킷굴삭기 13. 트랜치 14. 향타기 15. 향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24. 고소작업대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도급 관련 개정사항

도급 관련 집행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개념정의를 명확화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부담 범위 확대

중전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



개정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①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②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의 책임장소를 확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안전총괄책임자(건설기술 진흥법)를 둔 것으로 봄

- » 대상 ① **상시근로자**(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포함)가 **100명* 이상인 사업**
② **총 공사금액**(수급인 공사금액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는 50명

- » 업무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중지 및 재개,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감독 등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산업재해
예방 조치

-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②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장소 지원,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③ **도급인은 자신과 관계수급인*, 자신 및 해당 공정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과 함께 분기에 1회 이상(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함**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함

정보 제공

유해·위험성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설비의 분해·해체 등 작업, 질식·붕괴 위험 있는 작업 등을 시작하기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시정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 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질식·붕괴 위험 있는 작업 등 도급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 할 수 있음

적격수급인
선정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함

도급의 제한

금지

① 도급작업 ②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③ 허가대상물질(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종) 제조·사용작업

» **중전에 인가를 받으면 도급을 할 수 있던 작업들은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고 단시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관찰과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여 개정법에서는 사내도급을 금지함**

»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함

승인

①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없음

도급인의 의무이행 강화

내용

-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시 「(중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5년 이내 재범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규정을 신설
 - » 유죄의 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 산재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병과 규정을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상

- 개정법에서는 ①주요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 하며, ②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하였으며,
- » 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직종(9개)과 동일하게 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①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③학습지도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안전보건 조치·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직종별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고
- »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 등	
강사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교육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교육 가능 •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 » **벌칙**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II.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명확화

- »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작업의 중지(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고
- »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전부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 한편 **작업중지 해제** 시에는 중대재해 발생 해당작업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해제심의 위원회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공휴일 포함)**에 개최·심의하도록 함

● 위험성평가 관련 근로자 참여 의무화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 범위인지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법률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근로자 참여사항이 의무화되어 **반드시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함

●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 중전에는 대규모 공사현장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함
- » 개정법령에서는 **불꽃의 비산 거리(11m) 이내**의 가연성 물질,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으로 화재감시자 배치를 확대하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강화하였고
 - » 사업주에게 작업시작 전 화재예방 필요 사항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 등을 서면 게시하도록 함

●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 중전에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종(시내·외버스 운송업, 화물 운송업, 택배업 등)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 해당 업종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화학물질 누출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가 필요하여
 -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종은 **선임하도록 규정**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 작업 중 근로자에게 노출될 경우 건강장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주기적인 측정·검진이 필요한 유해인자에 2종(인듐, 1,2-디클로로프로판)을 추가 지정하였음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강화

- 그간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함
- » 개정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토록 하였으며
 -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을 경우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감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 **법인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함



Ⅲ. 제조업 현장! 다음을 지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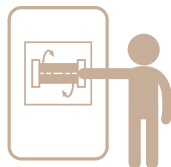


비정형작업 중 끼임사망사고 예방

제조업 사업주는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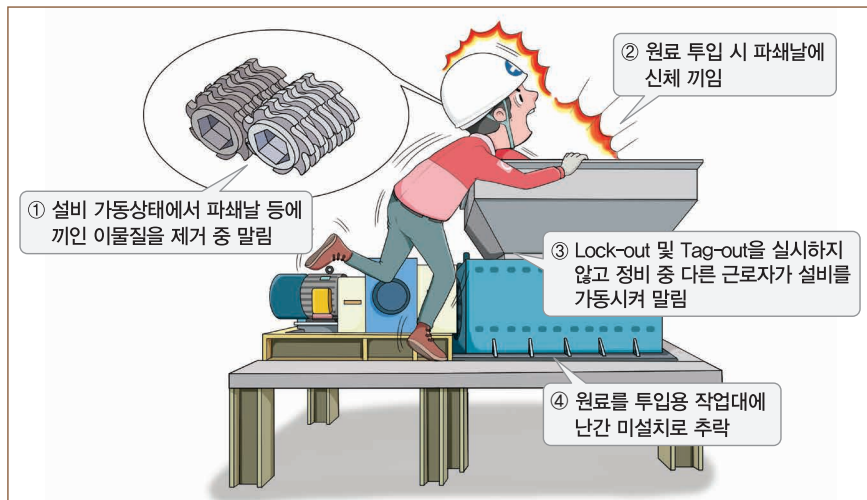
- »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 »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비정형작업 7대 사망위험 기계 : 산업용로봇, 컨베이어, 혼합기, 식품제조설비, 파쇄·분쇄기, 사출기, 프레스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예방 핵심 키메세지

< 파쇄기·분쇄기 >



△ 핵심예방조치(Key Message)

1 방호울 등을 설치하여 원료 투입구와 근로자의 안전거리 유지

2 이물질 제거 시 반드시 설비를 정지하고 전원 차단

3 비상정지장치(버섯형 등)를 설치하고 작동여부 확인

III. 제조업 현장! 다음을 지켜주세요!

< 컨베이어 >



① 덮개가 없는 컨베이어 하단에 말림

② 건널다리 미설치 장소에서 컨베이어 횡단 중 넘어짐

③ 덮개가 없는 풀리, 돌출부 등에 옷이 말림

④ 컨베이어 작동상태에서 점검, 청소 중 풀리에 말림

△ 핵심예방조치(Key Message)

- 1 컨베이어 점검 및 청소 시 반드시 설비를 정지하고 전원 차단
- 2 벨트 풀리, 돌출부, 벨트 하단 등에는 덮개·울 등을 설치
- 3 비상정지장치(버섯형, 로프형 등)를 설치하고 작동여부 확인

산재발생 시 조치

상황	조치
산재로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 발생	산재 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산재 발생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등을 기록·보존*

* 단,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보존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 대체 가능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 ① 제조업종 중 식료품 제조업, 트레일러 제조업 등에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기구·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 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조설비, 화학설비 등의 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III. 제조업 현장! 다음을 지켜주세요!

제조업 5대 재해유형 및 예방대책

끼임



○ 기계설비의 위험한 부분에 센서, 덮개 등 방호조치 설치 등

화재폭발



○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설비, 탱크 등은 누출이 없도록 조치

물체에 맞음



○ 지게차로 중량물 운반시 전용 팔레트 등으로 포장·운반 실시 등

떨어짐



○ 대형설비나 제품 위에서의 작업시 고소작업대 등 전용 승강설비를 사용 및 작업발판 설치 등

부딪힘



○ 지게차 운행시 운전자 시야 확보 및 과속 금지 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구분	선임 기준	역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는 안전 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함
관리감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사업장의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는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등 관련 업무 수행하여야 함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5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하여야 함
보건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50명~5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명~2,000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2,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 기타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3,000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자가 없거나 두어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III. 제조업 현장! 다음을 지켜주세요!

안전인증

사업장에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 시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30품목) 및 자율안전확인신고(20품목) 제품을 구입·사용하여야 함

안전검사

사업장에서 프레스, 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사용 금지

방호조치

지게차,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포장기계 6종류는
 »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을 실시

고용노동부 연락처



구분	연락처	구분	연락처
고용노동부 본부	1350	의정부지청	031-850-764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50-5772	고양지청	031-931-2864
서울강남지청	02-584-0009	경기지청	031-259-0265
서울동부지청	02-2142-8872	성남지청	031-788-1571
서울서부지청	02-2077-6171	안양지청	031-463-7351
서울남부지청	02-2639-2271	안산지청	031-412-1974
서울북부지청	02-950-9831	평택지청	031-646-1182
서울관악지청	02-3282-9092	강원지청	033-269-358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480	강릉지청	033-650-2525
부산동부지청	051-559-6670	원주지청	033-769-0823
부산북부지청	051-309-1552	태백지청	033-552-8603
창원지청	055-239-6580	영월출장소	033-371-6240
울산지청	052-228-188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331
양산지청	055-370-0935	전주지청	063-240-3399
진주지청	055-752-1752	익산지청	063-839-0031
통영지청	055-650-1949	군산지청	063-450-05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360	목포지청	061-280-0100
대구서부지청	053-605-9150	여수지청	061-650-0137
포항지청	054-271-683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064-728-6100
구미지청	054-450-355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307
영주지청	054-639-1155	청주지청	043-299-1314
안동지청	054-851-8037	천안지청	041-560-2874
충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419	충주지청	043-840-4032
인천북부지청	032-540-7980	보령지청	041-930-6142
부천시청	032-714-8788	서산출장소	041-661-5630

※ 안전보건공단 콜센터 : 1644-4544

